

## 보충시정질문(서면)

전덕생 의원

## □ 질 문

- 생활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양, 금액, 감사실의 감사결과 향후대책
- 노후관 지역은? (도면 표시)
- 생수의 보급으로 하수량이 증가됨. 원인자인 생수업체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하수료)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별지]

## 《BIS사업 세부내역》

구 분	수 량	사업비(천원)	
2001년	프로그램 및 센터장비	1식	262,775
	통신 비콘	185개	631,744
	정류소 비콘	390개	66,835
	차량 단말기	318개	144,663
	정류소 안내기	150개	203,297
	전기동사 및 설치비	1식	235,817
	소 계	-	1,545,131
2002년 상반기	차간 간격기	380개	342,000
	정류소 안내기	200개	272,000
	차량 단말기	50개	22,500
	전기공사 및 설치비	1식	103,500
	소 계	-	740,000
2002년 하반기	통신 비콘	50개	68,297
	정류소 안내기	40개	54,352
	정류소 비콘	100개	17,137
	전기공사 및 설치비	1식	20,214
	소 계	-	160,000
2003년	정류소 안내기	222개	514,000
	전기공사 및 설치비	1식	86,000
계		3,045,131	

□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의 부천시내체육관 사회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연도별 수입금액 및 사용료 납부, 기금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수입금액	사용료	기금적립액	비고
계	558,946,939	52,685,900	37,926,650	
1998년	22,565,000	2,256,700	-	
1999년	171,556,049	16,751,900	2,256,700	
2000년	188,426,500	14,507,550	16,827,300	
2001년	176,399,390	19,169,750	18,842,650	

□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 인건비 지출현황

○ 1998년도

(단위 : 원)

월별	계	갑	을	병	정	무	기타(강사)
계	12,890,000	2,900,000	1,800,000	2,400,000	1,980,000	1,400,000	1,410,000
11월	4,490,000	1,050,000	650,000	850,000	710,000	700,000	530,000
12월	8,400,000	1,850,000	1,150,000	1,550,000	1,270,000	700,000	1,880,000

○ 1999년도

(단위 : 원)

월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기타(강사)
계	109,085,400	20,278,800	11,508,000	12,633,600	12,944,400	11,235,600	10,148,400	30,336,600
1월	7,654,9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450,000
2월	10,500,74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5591,500
3월	7,890,4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685,500
4월	10,511,9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592,000
5월	7,764,1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559,200
6월	10,482,9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563,000
7월	7,733,9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529,000
8월	10,386,4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466,500
9월	7,698,4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493,500
10월	10,406,4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486,500
11월	7,659,4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454,500
12월	10,385,3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465,400

○ 2000년도

(단위 : 원)

월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기타(강사)
계	112,999,220	26,727,000	12,987,600	17,085,000	10,285,200	12,582,840	11,743,920	21,587,660
1월	8,065,8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2,310,400
2월	11,061,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582,000
3월	7,086,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1,331,000
4월	11,161,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682,000
5월	7,491,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1,736,000
6월	11,485,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2,006,000
7월	7,689,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1,934,000
8월	10,659,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180,000
9월	7,869,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2,114,000
10월	11,377,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898,000
11월	7,695,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1,940,000
12월	11,345,04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874,260

○ 2001년도

(단위 : 원)

월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기타(강사)
계	112,881,080	28,213,400	13,963,800	17,993,800	11,263,200	13,637,000	12,808,200	15,001,680
1월	9,104,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592,000
2월	9,206,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694,000
3월	14,096,080	3,716,200	1,783,400	2,353,400	1,397,600	1,731,000	1,612,600	1,501,880
4월	8,705,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193,000
5월	8,563,2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051,100
6월	13,754,200	3,716,200	1,783,400	2,353,400	1,397,600	1,731,000	1,612,600	1,160,000
7월	9,067,8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555,700
8월	9,348,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836,000
9월	13,912,200	3,716,200	1,783,400	2,353,400	1,397,600	1,731,000	1,612,600	1,318,000
10월	8,576,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064,000
11월	8,548,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036,000

## □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 운영비 지출내역(2001. 11월 현재)

(단위 : 원)

연도별 월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계	186,416,487	3,388,000	56,272,690	63,917,216	62,838,581	
1월	26,812,296	--	3,348,400	15,762,700	7,701,196	
2월	14,033,430	--	5,794,610	2,794,130	5,444,690	
3월	15,446,973	--	4,295,400	1,960,980	9,190,593	
4월	13,676,564	--	7,547,660	1,317,300	4,811,604	
5월	14,199,825	--	3,661,930	5,996,800	4,541,095	
6월	13,175,163	--	4,121,820	3,393,730	5,659,613	
7월	20,113,755	--	3,604,270	10,867,160	5,642,325	
8월	13,187,075	--	4,754,250	2,982,100	5,450,725	
9월	11,211,700	--	4,085,700	2,212,680	4,913,320	
10월	13,616,666	--	4,192,110	4,286,136	5,138,420	
11월	16,836,630	1,730,000	6,335,280	4,426,350	4,345,000	
12월	14,106,410	1,658,000	4,531,260	7,917,150	--	

## &lt; 인천시의 가족눈썰매장 및 야외수영장 시설 허가현황 &gt;

## □ 민간 눈썰매장

시·도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규모(m <sup>2</sup> )	투자	운영	비고
경기도 (33개소)	남서울	경원건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10,954	경원건설	좌동	
	그린랜드	원천그린랜드	수원시 팔달구 하동	20,480	원천그린랜드	"	
	이포리조트	천우개발(주)	여주군 금사면	15,515	천우개발(주)	"	
	로얄	이연	양주군 주내면	20,215	이연	"	
	하니랜드	노상덕	파주시 조리면	5,850	노상덕	"	
	유일	유일산업(주)	파주시 광탄면	1,968	유일산업(주)	"	

	중부	광주개발	광주군 실촌면	12,646	광주개발	좌동	
	산정리조트	주영국	포천군 영북면	6,900	주영국	"	
	나산관광	나산관광	포천군 일동면	12,072	나산관광	"	
	크낙새빌리지	김동준	포천군 소흘읍	2,511	김동준	"	
	베이스타운	상부실업	포천군 내촌면	11,307	상부실업	"	
	한화리조트	성하연	양평군 옥천면	14,502	성하연	"	
	양평리조트	이준섭	양평군 강하면	16,091	이준섭	"	
	침암	박병호	이천시 부발읍	6,027	박병호	"	
	동진	(주)이덕	이천시 모가면	17,661	(주)이덕	"	
	기흥훼밀리	기흥관광	용인시 기흥읍	13,806	기흥관광	"	
	지산	홍호정	이천시 마장면	1,350	홍호정	"	
	에버랜드	삼성	용인시 포곡면	65,668	삼성	"	
	용인한화	한화	용인시 남면	24,437	한화	"	
	민속촌가족	조원관광	용인시 기흥읍	10,217	조원관광	"	
	부림	부림관광	안성시 삼죽면	4,156	부림관광	"	잔디
	하나로	심상철	화성군 태안읍	3,600	심상철	"	
	빅토리	신철호	파주시 교하면	3,045	신철호	"	
	금촌레저타운	김부경	파주시 교하면	2,863	김부경	"	
	강남	자인관광	광주군 광주읍	7,801	자인관광	"	
	화이트	허창식	광주군 광주읍	12,480	허창식	"	
	석정관광농원	이완재	평택시 이충동	2,644	이완재	"	
	푸른샹터관광	홍성호	평택시 서정동	2,195	홍성호	"	
	파인리조트	김용길	용인시 양지면	2,022	김용길	"	
	김포가족	이기인	김포시 월곶면	12,000	이기인	"	잔디
	맘모스	(주)진홍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3,810	(주)진홍	"	
	황금	윤승희	평택시 안중면	1,187	윤승희	"	
	서울랜드	한덕개발	과천시 막계동	5,300	한덕개발	"	
인천시	송도 사계절	(주)도시관광	연수 옥련동	17,512	(주)도시관광	"	
(2개소)	대공원사계절	(주)삼정엘리	남동구 장수동	24,487	(주)삼정엘리	"	잔디

## □ 민간 실외수영장

시·도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규모(m <sup>2</sup> )	투자	운영	비고
경기도 (62개소)	원천점보	강병준	수원시 팔달구 하동	7,521	강병준	좌동	
	광교원더랜드	설용재	수원시 장나구 하광동	3,929	설용재	"	
	삼풍	최기복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297	최기복	"	
	원천파도	한천수	수원시 팔달구 하동	36,363	한천수	"	
	사기막골	정영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16	정영배	"	
	은행주공	김용만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149	김용만	"	
	안양	최길해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915	최길해	"	
	왕방산	홍순철	동두천시 탑동동	2,734	홍순철	"	
	맘모스	김동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685	김동관	"	
	어린이농장	박인선	평택시 진위면	1,051	박인선	"	
	황금	윤승희	평택시 안중면	8,588	윤승희	"	
	무봉산수련원	평택시장	평택시 진위면	800	평택시장	"	
	웨릭스	홍종호	고양시 성사동	883	홍종호	"	
	북한산성	김홍영	고양시 효자동	1,326	김홍영	"	
	YMCA	YMCA	고양시 일산구 풍동	3,128	YMCA	"	
	해룡파크	최해룡	고양시 설문동	4,475	최해룡	"	
	복돌이	김백중	과천시 막계동	2,100	김백중	"	
	천마산	고초근	남양주시 화도읍	1,250	고초근	"	
	덕송	이규민	남양주시 별내면	8,264	이규민	"	
	서울랜드	정기태	과천시 막계동	3,023	정기태	"	
	용인래저	이호숙	용인시 이동면	2,440	이호숙	"	
	파라다이스	심상용	양주군 장흥면	1,686	심상용	"	
	로얄	김청산	양주군 장흥면	6,010	김청산	"	
	양주리조트	일영	양주군 장흥면	5,000	일영	"	
	일영	김봉래	양주군 장흥면	6,459	김봉래	"	
	신홍	이찬영	양주군 장흥면	3,187	이찬영	"	
	올림피아	권병구	양주군 장흥면	3,111	권병구	"	
	장홍	김기영	양주군 장흥면	2,912	김기영	"	
	뉴파라다이스	음태진	양주군 장흥면	7,041	음태진	"	
	오뚜기	이관형	양주군 장흥면	4,030	이관형	"	
명지	김장환	양주군 장흥면	855	김장환	"		
까치레저타운	고광문	여주군 금사면	1,007	고광문	"		
주말	정학영	화성시 태안면	14,611	정학영	"		
유일래저	양윤양	파주시 광탄면	1,528	양윤양	"		

## □ 실외수영장

시·도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규모(m <sup>2</sup> )	투자	운영	비고
경기도	라비돌	신주균	화성시 정남면	4,615	신주균	좌동	
	하니랜드	노상덕	파주시 조리면	1,166	노상덕	"	
	구립	김용욱	광주군 남종면	1,906	김용욱	"	
	남촌	정용승	광주군 실촌면	1,575	정용승	"	
	중부	이종덕	광주군 초원면	1,783	이종덕	"	
	베이스타운	석두성	포천군 내촌면	4,602	석두성	"	
	서운	박기수	포천군 내촌면	994	박기수	"	
	운악산향토농원	전춘배	포천군 하현면	2,440	전춘배	"	
	산정리조트	주영국	포천군 영북면	2,645	주영국	"	
	나이라가라	이명진	가평군 설악면	1,648	이명진	"	
	정원	정경원	가평군 설악면	1,294	정경원	"	
	청평후랜드리	김덕원	강평군 상면	3,546	김덕원	"	
	남한강수련원	배기선	양평군 강산면	5,024	배기선	"	
	미리내	(주)미리내	양평군 원삼리	388	(주)미리내	"	
	한화리조트	성하현	양평군 옥천면	10,527	성하현	"	
	광탄레저파크	김정환	양평군 용문면	568	김정환	"	
	청암	박병호	이천시 부발읍	10,886	박병호	"	
	프리지C.C	성하현	용인시 남사면	4,890	성하현	"	
	골드C.C	이동준	용인시 기흥읍	1,339	이동준	"	
	금광관광농원	이희진	안성시 금광면	685	이희진	"	
부림수영장	박길수	안성시 삼죽면	383	박길수	"		
양평실외	이윤수	양평군 개군면	554	이윤수	"		
파인리조트	김용길	용인시 양지면	4,395	김용길	"		
한국민속촌	박행천	용인시 기흥읍	900	박행천	"		
이포리조트	천우개발	여주군 금사면	1,193	천우개발	"		
인천시 (9개소)	안젤라	최연숙	중구 중산동	695	최연숙	"	
	칭화플장	김세훈	연수구 칭화동	1,173	김세훈	"	
	송도플장	유창희	연수구 옥련동	5,530	유창희	"	
	부평	박용완	계양구 계산동	22,274	박용완	"	
	삼성	양은석	강화군 불은면	4,959	양은석	"	
	우래정	조병돈	강화군 길상면	3,966	조병돈	"	
	코레스	정명섭	강화군 길상면	728	정명섭	"	
	보문	고건희	강화군 삼산면	9,601	고건희	"	
	삼별초	이용선	강화군 내가면	862	이용선	"	

## □ 자치단체 눈썰매장

시·도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규모 (㎡)	투자	운영	비고 (명/천원)
경기도 (3개소)	용인마을	용인시장	용인시 양지면	6,000	용인시장	시설공단	21,809/ 49,493
	가평눈썰매장	가평군수	가평군 상면	9,780	가평군수	개인위탁	-
	수련관부설	평택시장	평택시 진위면	4,440	평택시장	개인위탁	-
인천시	서구사계절	서구청장	서구 공촌동	8,358	서구청장	시설공단	93,321/ 450,000

## □ 자치단체 실외수영장

시·도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규모 (㎡)	투자	운영	비고 (명/천원)
경기도 (2개소)	청소년회관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상패동	869	동두천시장	시설공단	11,369명/ 1,500만원
	수련관부설	용인시장	용인시 양지면	2,000	용인시장	시설공단	1,837/4,109

## &lt; 여성발전기금의 단체별 지원 및 추진현황 &gt;

단체, 법인명	지원금(천원)	지원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계	14,135	6개 사업	42회/1,977명	
새마을부녀회	3,300	여성지도자 연수교육	1회/106명	
부천여성의전화·부천여성 사회교육원	2,700	주민자치센터와 함께하는 여성교실	19회/183명	
부천시민연합	2,000	여성이 만드는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8회/208명	
천주교인천교구 실직자대 책위원회 부천희망의나눔 터	1,235	실직여성·여성가장을 위한 위기극복 프로그램	2회/45명	
(사)부천여성노동자회	2,500	예비취업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고용관련법 교육	12회/1,200명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부천일하는여성의집	2,400	성희롱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	2회/235명	



## &lt; 부천시 문화재단 답변내용 &gt;

## □ 복사골문화센터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99년부터 조오런스포츠센터에 대한 비품지원, 설비보수사항으로 냉난방의 효율증대를 위한 수영장 공조기덕트설치, 열교환기 분해정비수리, 복사골문화센터 지붕 낙설로 인해 파손된 수영장 채광창 랙산시트 보수 등 총 4회에 걸쳐 5백1십3만1천원의 수리 보수 공사 등을 시행하였음
- 또한 수영장 여자 락커룸의 경우 사우나실의 열기로 인해 실내온도가 매우 높아 중앙공급방식으로 냉방의 한계가 있어 냉방효율증대, 에너지절감 등의 이점 등으로 에어컨을 2백7십만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설치한 근거는 기본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민법 제626조1항(필요비)에 의한 임대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됨
- 이외에 1억1천8백9십만원 상당의 비품 등은 공단재산 유상사용허가조건 제3조(사용료)에 의거 준비단 및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때부터 사용하던 비품을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동산감정가를 포함하여 사용료에 계상, 조오런스포츠센터에 유상 사용허가한 사항임
- 조오런스포츠센터와의 민사조정내용은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조오런스포츠센터의 미납임대료 1억7백여 만원(연체료 15% 포함)에 대하여 4월, 5월, 7월, 8월 등 4회에 걸쳐 납입독촉을 하였으며, 9월에는 스포츠센터의 재산을 조회하여 비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였음
- 조오런스포츠센터에서는 시설을 임차한 후 복사골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운영에 들어갔으나 건물만이 존재할 뿐 천장 및 바닥공사가 미비하여 화장실 천장공사 등 건물의 가치증진의 민법 제626조 2항(유익비) 비용이며, 수영장 내의 화장실 천장의 재질이 석고보드로 습기로 곰팡이 및 붕괴 우려 및 헬스장은 시에서 전환된 단순체력 운동기구 외에는 없는 등, 운영상의 애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한 수영장, 유아풀장 수심공사, 화장실 천장공사 등의 보수비 및 헬스장비 등의 구입물품에 대해 1억4천4백7십8만4천원을 부천시 및 재단에 요구하였고, 올해 9월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사항임
-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주)조오런스포츠센터가 지난 2년간의 누적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체납한 임대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차후에도 징수할 실익이 없고, 새로 공개경쟁입찰 계약한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의 정상영업을 위하여 사태의 조기 수습과 더불어 경영악화와 부인의 사망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집기일체(144,783천원)를 인도받고 임대료(107,586천원)을 포기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게 되었음
- 임대료를 환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이후 임대시설에 대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서 당초 조오런스포츠센터보다 1천여 만원이 많은 1억8천1백5십만원에 계약하여 차질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료 인하 및 시설의 내실운영으로 체육시설을 찾는 회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붙임 1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관련 -

# 잠정계약조정 및 세부실행협약(안) 협의 결과

## □GBT 협의 목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건설과 관련하여,

-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조사활동 특별위원회에서 '00. 10. 4일자로 체결된 계약서(시의회: "잠정계약서"로 규정)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과
- 향후 부천시와 GBT간에 체결될 세부실행협약과 관련하여 협의된 기본(안)에 관하여 양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

## □개 요

- 협의일시 : 2001. 11. 20(14:00~19:00)
- 장 소 : 부천시 청소사업소 회의실
- 협의 일정 : 설계설명회에 대한 의견교환  
잠정계약서 수정 보완 또는 강화와 관련된 협의  
세부실행협약(안) 관련 기본(안) 협의
- 참석자 :
  - 경기도 - 환경자원과(음식물자원화 담당 김경기 외 1인)  
교류협력과(배희동 전문위원 외 1인)
  - 부천시 - 청소사업소(이종훈 소장, 김종근 팀장)
  - G B T - Mr. Ted Song(GBT 아시아 담당 이사)
  - 삼성엔지니어링 - 신용원 부장외 1인(GBT 국내 파트너)

□ 주요 협의내용

- 부천시, 시의회, 전문가위원회 및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기술검증 부분은 GBT 측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대장동에 건설될 5톤 규모의 Pilot Plant가 최종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는 사항에 양측이 합의

- ※ GBT는 5톤 규모의 Pilot Plant의 운영결과에 실패할 경우, 본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

- GBT는 하수슬러지가 음식물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가수분해 처리공정을 사용하고 UASB로 병합처리 하는 것임. 다만 최종 여과된 잔여분만 목적에 맞게 폐기하는 것이므로 분리공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강조

- 또한, UASB 처리공정은 가수분해 공법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을 추출 액화시킨 물질을 혐기처리하는 것으로 침단처리공법임

- 부천시는 설계설명회 자료 검토결과, 당초 계약대로 지하 건설 부분에 미흡함을 지적하였음

- ※ GBT는 설계설명회에서 제시된 조감도가 hydrolysis system을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

- ※ 아울러 대부분의 공정은 지하건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후 설계가 완성되면 계약과 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

- ※ 또한 GBT와 삼성엔지니어링은 본 시스템이 변적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므로 법적조건과 규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GBT 특위에서 보고된 5개 조항에 대한 수정, 보완, 강화 및 해석상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의 실시

※ 불임자료 1 참조

- 세부실행협약은 부천시가 본 시설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요건을 세부실행협약에 규정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부천시가 받아야 할 혜택(incentives & benefits)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마다 양측간에 협의완료

※ 불임자료 2 참조

불임자료 1-1: 계약서 수정 또는 보완에 관한 주요내용

불임자료 1-2: 세부실행협약 협의 주요내용

# 붙임 1-1 **잠정계약서 수정 또는 보완에 관한 주요내용**

## 1. 제 1조 1항: 보완

위안	수정, 보완 또는 정부대응	지속안
<p>1.1 GBT와 CH2M HILL은 합작하여 이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와 조건에 따라 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최소 일일 20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쇄형 혐기성 젖은 쓰레기처리 시설을 적용하는 법과 규칙에 따라 설계하고 개발하며 건설한다. 젖은 쓰레기처리시설은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산물로 전기, 토지 개량제 및 혼합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p>	<p>1.1 GBT와 CH2M HILL은 .... 한다. GBT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전량을 병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슬러지처리에 관한 요금은 시와 GBT가 별도 계약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p>	<p>1.1 GBT와 CH2M HILL은 .... 한다. GBT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전량을 병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슬러지처리에 관한 요금은 시와 GBT가 별도 계약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p>
<p>GBT 의견</p>	<p>슬러지 처리에 관하여 이미 부천시와 합의된 사항이며 등보한바 있으므로 이견 없음 (수정안 부천시에 전달)</p>	
<p>부천시 의견</p>	<p>"병합"이라는 단어 삽입 요구에 관하여는 본 시설이 병합처리를 하는 시설임을 설계설명회에 발표한바 있으나, 이해부족인 것으로 생각됨, 병합이라는 단어 삽입 수용함 수정계약(안) 접수하였음</p>	
	<p>"병합" 처리 삽입요구</p>	

## 2. 제1조 2항: 수정

원안	수정, 부원 또는 정부내용	최종안
<p>1.2 GBT는 젓은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및 필요한 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미화 5000만불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p> <p>GBT는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에 대한 이행, 완성 보증보험을 국제적 신용등급 최우량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획득하여 부천시에 제출하며, 독자적으로 책임진다.</p>	<p>1.2 GBT는 .....진다.</p> <p>GBT는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에 대한 이행, 완성 보증보험을 국제적 신용등급 부천시가 수락하는 우량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획득하여 부천시에 제출하며, 독자적으로 책임진다.</p>	<p>1.2 GBT는 .....진다.</p> <p>GBT는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에 대한 이행, 완성 보증보험을 국제적 신용등급 부천시가 동의하는 우량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획득하여 부천시에 제출하며, 독자적으로 책임진다.</p>
GBT 의견	<p>“부천시가 수락하는”이라는 내용에 동의 못함</p> <p>GBT 차원에서는 부천시가 전문 평가기관도 아니고 부천시가 요구하는 보험회사를 선정하여 등보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 발생</p> <p>따라서 “부천시가 동의”으로 내용 변경 요구</p>	
부천시 의견		

### 3. 제10조 1항: 추가삼입

의견	수경, 모의 또는 정부내용	참증인
<p>10.1 부천시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형성된 자치단체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계약은 부천시 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p>	<p>10.1 부천시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형성된 자치단체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계약은 부천시 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p> <p>단 본 계약의 실제이행(제14조에 규정된 보증계약의 체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은 부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 본 건은 추후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총인석 특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음</p>
<p>GBT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부천시 의회가 본 시설건설에 대한 예산지원 또는 예산지원 동의권도 없음</li> <li>-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가?</li> <li>- GBT가 이를 수락하여 의회가 모든 질정권한을 갖게 되면, 손해배상이 발생하였을 때 의회가 책임지는가?</li> </ul> <p>계약당사자가 변경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p>	
<p>부천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의회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 사업"의 중요성을 80만 부천시민들의 대변인 입장에서 GBT사업 조사활동 특위까지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고, 하나에서 열까지 부천시가 계획 중에 있는 모든 사업추진에 전반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li> </ul>	

## 3. 제10조 2항: 추가삽입

원안	수정, 보완 또는 첨부내용	최종안
<p>10.2 경기도는 경기도내 시군 및 서울시, 인천시(참여자치단체)로부터 확인된 일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공식 문서를 제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p>	<p>그외에도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찌든 쓰레기의 반입을 동의하는 공식확약서를 취득한바 있으며, 나아가 경기도는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포함)로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매일 평균 1000톤, 합쳐서 매일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동의하는 공식확약서를 취득할 것을 동의하였다. 경기도는, 행정자도력을 통하여 GBT호 하여금 이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늦어도 60일 이내에 각각의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반입에 관한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확약한바 있다.</p>	<p>※ 문장을 재구성하고 특위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하여 문장을 통보하기로 하였음.</p>



의견	주요 부의 또는 정부 대응	최종안
	<p>단 부천시는 경기도의 위와 같은 제반 협약서 취득 또는 "수도권지역자치단체" 각각의 위에 기재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GBT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항은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임 것으로 생각함</li> <li>- GBT는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힘</li> <li>- GBT는 세부실행협약이 완료되면, 49개 GBT와 참여자치단체 간에 음식물쓰레기 반입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므로 이 부분에서 부천시의 잉여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li> <li>- 계약내 일부 행위는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양측이 조정하여 계약에 반영시키면 문제가 없음</li> <li>- 계약해석누락부분 삽입 요청 수락함</li> <li>- 다만 GBT는 경기도의 행정지원을 받아 GBT-참여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삽입요구</li> </ul>	
<p>부천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가 참여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함</li> <li>- 해석누락부분 삽입요구</li> </ul>	

## 2. 제10조 3항: 삼입

결안	수정, 보완 또는 첨부내용	최종안
10.3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 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로부터 쓰레기처리시설 입구까지 젓은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 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	10.3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 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로부터 쓰레기처리시설 입구까지 젓은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 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  단, 부천시는 위와같은 국도비의 실제 배정 및/또는 경기도에 의한 환경부 공식문서의 취득 및 승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부천시와 경기도의 사안이므로 특위와 협의하여 통보하기로 하였음.
GBT 의견	- GBT는 전용도로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그러나 만약, 부천시가 전용도로가 건설되지 않으면,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심각히 고려	
부천시 의견		
경기도의견	- 국비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특위와 협의하겠음(국, 영문본의 차이만 해결하라는 주문 구두접수: City를 경기도로 할것)	

2. 제11조 : 수정

항 목	수정·보완 또는 정부 대응	최 종 인
<p>11. 중재 (Arbitration)</p> <p>이 협정서의 의미에 대해서 또는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측(상기에서 언급한 대외비 조항에 의하여 구속된 인 포함)의 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러한 분쟁은 세 명의 중재위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중재위원선정은 각 계약당사자가 한 명씩 선정을 하고 제3의 중재위원은 양쪽에서 선정된 두 명의 중재위원이 선정한다. 중재절차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해서 서면통고를 한 후 45일 이내에 완결된다. 그러한 통고가 있으면 양측은 각 1명의 중재인을 5일 이내에 선정한다. 이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규정이 적용된다. 중재위원회 또는 양측이 상호 합의한 제3의 장소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가 처리되어야 한다.</p>		<p>※ 부천시 및 특위와 협의하여 통보하기로 하였음.</p>

의견	수거처와 구경부태	최종인
<p>중재 위원회 또는 중재 위원에 의하여 결정된 중재절차 승소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중재비용을 보상받는다. 중재의 최종 결정 일까지 플랜트는 계속해서 가동한다</p>		<p>※ 부천시와 경기도의 사안이므로 특위와 협의하여 통보하기로 하였음.</p>
<p>GBT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심 혹은 2심 등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가능</li> <li>- 단, 단심일 경우 국제관행에 따라 ICC 중재규정에 의거, 스위스 제네바로 할 것을 요구</li> </ul>	
<p>부천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심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li> </ul>	

붙임 1-2

세부실행협약 협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1. 투자비 관련	- 미국측의 증액 투자 책임을 확실히 명기	- GBT는 투자증액 또는 추가 투자책임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겠음
2. 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제출 시기 명시	- 이행보증보험은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CH2M HILL과 삼성엔지니어링)
3. 부지임대조건	- 임대료 산정(원 / m <sup>2</sup> ) - 추가부지 확보 대책 (구매비, 기부채납 및 행위 허가)	- 임대료납부는 부천시 임대와 관련된 조예에 따름 - 토지를 GBT가 매입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며 25년간 기부채납함 - GBT가 부지매입시에는 부천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제공
4. 기술 이전 조건	- 기술이전 대상 선정	- 부천시가 원하는 시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합 가동이 끝나는 시점기준으로 적절한 시기에 운영 및 기술에 관한 모든 기술제공 (급여제외-훈련비용 GBT가 부담)
5. 철거조건	- 계약서 제 4조 2항 관련 구체적인 명시 요망	- 한국법에 따르되, 계약을 위반하여 철거명령 발부서 3개월 이내 철거함

항 목	주요내용	회의내용
6. 전용도로 건설	-계약서 10조 3항 관련 구체적 명시	- 계약내용과 동일
7. 부천시에 제공해야 할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반입수수료 납입방식 결정</li> <li>※ 경기도 환경기금 납입 방식 참가</li> <li>-수영장 건설 요건 설정</li> <li>-무상전력 및 유기질 비료제공 요건 설정</li> <li>-음식물쓰레기 무상반입 처리량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반입수수료 납부 (납입시기는 배월 20일로 함)</li> <li>- 환경기금을 제공</li> <li>- 수영장은 부천시가 요청하는 시기 및 지역에 국제규격으로 건설하여 제공함</li> <li>- 음식물쓰레기는 40톤 무상처리 (잉여분은 부천시가 비용부담)</li> <li>- 유기질 비료제공 (부천시가 필요량은 동보하면 협의할 예정임)</li> <li>- GBT는 부천시가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력 전량 무상공급에는 반대 입 장 표명 전력생산에 드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량무상제공차원에서 시설비 투자는 무의미함 (부천시는 요청전력량을 검토하여 제안하겠음)</li> </ul>
8. 시설의 기부채납	-기부채납시기, 조건 등 명기	- 계약과 동일하게 실시

구분	주요내용	참조내용
9.	폐수처리 관련 -폐수유입조건 및 돈당처리비용 결정 -유입수에 의한 문제점 발생시 대책 등 기타	다음 페이지 참조
10.	하수슬러지 처리관련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유입조건 선정 -돈당 처리비 및 최종 처리 후 대책 -농림부 고시 변경시 대책	다음 페이지 참조
11.	중재	- 계약 참조

## □ 폐수 및 슬러지처리 협의 내용

○ 부천시는 하수과에서 제공된 자료로 협상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만 전달  
(처리단가 관련 - 첨부참조)

### ○ GBT의 제안

- GBT는 처리시설 건설 투자비 및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현행 부천시가 지출하는 하수슬러지  
톤당 해양투기 비용만 받고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함  
(19,192원/톤)

- 실제로 부천시하수처리장의 유입수는 BOD가 설계기준치보다 낮게 유입되어 많은 양의 BOD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폐수처리는 단가는 현행 부천시가 처리하는 뜬땅처리비(27.57원/톤)를 받는 것으로 하되, 처리  
시설의 설계기준치에 맞게 150 ppm 기준으로 유입수를 환산하여 청구하도록 하여 양측이  
win-win하는 방식으로 추진 - 차액을 서로 지급함

예) 폐수발생량 25,000톤, BOD 800 ppm의 조건일 경우

폐수발생량을 25,000톤 X (800/150)원으로 계산하여 총 133,000톤으로 환산.

환산량에 27.57원을 적용하여 하수슬러지와 win-win 처리



## 붙임 2

GBT 기술설명 의견서

1. Project 명 :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비
  2. 제안사 : 삼성 엔지니어링(한국), GBT CH2M HILL(미국)
  3. 내용
    - 1) 주 처리공정 및 구성설비 :
      - ◆ 처리용량 : 2,000 T/일 → 2,400 T/일
      - ◆ 공정 및 설비
        - 전처리 공정 : 반입조 - 저장기능(용량기준 없음)  
1차 파쇄기 - 파분기능(파쇄능력 부족)  
Trommel Screen- 선별능력 부족  
(미세칩잡물 제거불가)
        - 감량화 공정 : 혼화조 - sludge 화 공정  
하수처리수사용 (25,000m<sup>3</sup>/일, 연계검토 필요)  
가수분해조-고온습식산화조, 25kg/cm<sup>2</sup>, 210℃  
(열에너지 수지 및 자원화 경제성 검토필요)  
탈수기-Screw Press
        - 소화 공정 : UASB 소화조-탈수여액 소화(bio gas 생산을  
저조, 검토필요)
        - 자원화 공정 : Steam Boiler - Steam Turbine 발전  
(상세 사양없음, 에너지 수지검토 필요)
        - 퇴비화 공정 : 탈수cake후숙(발생탕과탕예상, 2차오염성검토필요)
      - ◆ 공정 변경 검토
        - 초기제안은 증온소화로 산소화조및 메탄소화조로 구성되었으나  
부지조건 과 경제적투자 로인해 감량화공정으로 전환함.
- 결과적으로, 자원화공정에서 감량화공정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원화 효율이 대폭 삭감됨. 또한 이로인한 영향평가를  
위해 물질수지, 열 수지, 에너지 수지등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제반 기초검토가 필요함.



## 검 토 의 건 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GBT사의 기술 설명회를 듣고 토목분야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GBT사가 한국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모든 설계는 타당성 검토와 세밀한 현장검토 후 이에 따른 설계가 실시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거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인접 시, 구, 군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에 따른 대기환경이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마친 후 사업이 추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목관련 세부적인 실시설계자료 미비

1. 음식물쓰레기반입전용도로 건설(안)과 관련하여 주변 외곽도로 등 향후 25년을 예측할 수 있는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2. 현재 layout로 제시되고 있는 hydro-AnO<sub>2</sub> system 공정을 분석해보면 실험실에서 얻어진 자료로서 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장치 규모의 대형화(음식물쓰레기 처리 2000톤/day), 즉 scale up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먼저 pilot plant를 사용하여 예기치 못했던 전처리 공정 등 제반 문제점들을 비롯한 운영관리면에서도 그 기능이 양호하다고 증명될 수 있는 최종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GBT 설명회 의견서

(부천시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

2001. 11. 21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분류 과정을 [1] 연구실험 → [2] PILOT PLANT(소규모 5ton's) → [3] MAIN, PLANT(2,000ton's)이라는 흐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번 설명은 [1]과정에 관해서 주된 설명이었고,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크게 잔류되고 있다.

1. [1]의 실험실 결과가 효과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더라도 [2]의 PILOT PLANT로 이행시키기 위한 각 공정(과정 또는 흐름이 아님)에 관해서 전혀 설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2]의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공정설계를 위한 실험과정이 필수조건으로 부각된다. 이 단계가 완성되어야 비로서 전체사업의 50%가 완료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PILOT PLANT를 전초로 한 MAIN PLANT는 여기서 논의할 단계가 못 되고, 사업의 가능성 여부의 판단도 어려운 단계에 있다.

### 검 토 의 건 서

- 부천시 청소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11월 19일 시행한 설명회 참석해서 추진경과와 각종 사항을 경험함
- 전반적인 진행과 추진과정의 결정은 부천시, 의회, 각 단체에서 좋은 의견으로 진행되었지만 금번 위촉받은 자문위원은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기술적 검토가 있을 것이니,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면 연락 요청합니다. 특히 건축, 토목분야는 사전조사, 분석이 필수적이니 적당한 시간에 예정 부지와 건물신축부지의 현장답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문위원이 모두 참석하기 곤란할 테니 전문분야별로 귀 사업소에서 회의개최를 희망합니다.

### 검 토 의 건 서

제 목 : GBT 설명회 의견서

2001. 11. 22

검토자 : (부천시 자문위원)

GBT의 설명회를 통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고 당시의 답변내용이 이해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음. 따라서 설명회 자료 중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답변내용의 서면확인 되었으면 합니다.

1. 부천시가 자문위원께 배부한 자료의 검토사항은 반드시 명확한 확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 변경 제안한 공법이 초기의 제안공법보다 경쟁력 있어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설득력이 부족함. 따라서 공법변경 사유 또는 답변을 서면화하여 재발 방지 요함
3. 음식물을 선별, 파쇄, 가수분해 후 약 10배의 물로 희석한 후 UASB(혐기성소화공정의 하나)로 소화처리하고 고형물은 퇴비화하고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폐수는 다시 슬러지의 형태로 재생산됨. 따라서 본건처럼 음식물을 부분적으로 처리할 경우 방류수의 오염물 농도(BOD, COD, SS, T-N, T-P)에 대해 제안 업체는 보증치를 제시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천시 하수처리장과 처리단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4. GBT & CHM2HILL사의 유사 실적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음식물의 경우 본건처럼 대형화하는 것은 향후 원료공급량의 감소 및 운반비 상승에 따른 원료의 위탁 기피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공법의 안정성과 검증의 방법에 유사 사례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해당관계자 여러분(투자자, 부천시 및 경기도)은 국민에게 이로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기원합니다.

## &lt;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추진경위 &gt;

- 2001. 8. 20 : 심곡3동 주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1차 설명회
- 2001. 8. 23 : 심곡3동 주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2차 설명회
- 2001. 9. 5 : 심곡본1동 주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설명회
- 2001. 9. 12~9. 14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안내문 배부 : 전단 1,300매
  -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용기 배부 : 34개
- 2001. 9. 17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 원미구 심곡3동(1통, 2통) \_\_\_\_\_ 723세대 동운환경
  - 소사구 심곡본1동(18통, 25통) \_\_\_\_\_ 536세대 원미환경

## &lt; 반입 중지 건수 및 사유 &gt;

 삼정동소각장

반입중지일	일수	반 입 중 지 사 유
2001. 2. 19	1	• 적환장 폐쇄에 따른 쓰레기 검사대 설치 요구
2001. 3. 12~3. 16	4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반입 및 침출수 발생으로 중동신도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완전 분리 후 건조한 쓰레기만 반입 요구
2001. 6. 6~6. 10	5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반입 및 쓰레기수거운반차량 내 침출수 제거 후 반입 요구 • 중동신도시 및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차량은 11톤으로 반입하고 그 외 지역은 5톤 이하의 수거운반 차량만 반입 요구 • 상1동 지역의 로데오거리, 중동지역의 LG백화점 주변상가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처리 요구
2001. 10. 23~10. 26	4	• 감시원 근무 중 쓰레기 검사대에 의한 발가락 부상으로 반입 중지

 대장동소각장

반입중지일	일수	반 입 중 지 사 유
2001. 1. 15	1	• 재활용 선별 후 발생한 이물질 시범소각 반대
2001. 2. 14~2. 15	2	• 재활용 선별 후 이물질에 대하여 야간반입 방지를 위한 반입장 출입구 시건장치 설치 요구

2001. 3. 1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을 대장동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변경요구</li> </ul>
2001. 4. 18~4. 2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적환장에 반입된 쓰레기 중 병원에서 배출한 쓰레기 반입</li> <li>• 2001. 3. 15일부터 쓰레기적환장 폐쇄 미이행</li> <li>• 침대커버 및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물 처리요구</li> <li>•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경지 청소요구</li> <li>• 다량폐기물 반입, 반출량 자료요구</li> </ul>
2001. 6. 14~6.1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적치된 폐기물 미처리</li> <li>• 침출수처리지역 전담 청소인력 배치</li> <li>• 삼정동소각장에 반입하고 있는 4개 업체 청소차량에 대하여 대장동소각장 내 출입금지</li> </ul>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치 및 측정치 >

2001. 11. 30 현재

항 목	단 위	배출허용기준	측 정 결 과		비 고
			삼정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	
다이옥신	ng-TEQ/Nm'	0.1	0.004	0.012	
먼지(Dust)	mg/Sm'	80(12)	4.37	7.08	
황산화물(SOx)	ppm	300(12)	12.87	4.84	
일산화탄소(CO)	ppm	600(12)	8.29	11.76	
질소산화물(NOx)	ppm	200(12)	23.85	25.05	
암모니아(NH <sub>3</sub> )	ppm	100	0.62	1.27	
시안화수소(HCN)	ppm	10	0.39	0.02	
황화수소(H <sub>2</sub> S)	ppm	15	0.26	0.03	
염화수소(HCl)	ppm	50(12)	0.96	3.95	
염소(Cl <sub>2</sub> )	ppm	60(12)	0.83	0.07	
프롬알데히드(HCHO)	ppm	20	0.25	0.22	
불소화물(HF)	ppm	3	0.66	0.34	

이황화탄수(CS <sub>2</sub> )	ppm	30	불검출	불검출
브롬화합물(Br)	mg/Sm'	5	0.05	불검출
벤젠(C <sub>6</sub> H <sub>6</sub> )	mg/Sm'	50	불검출	불검출
페놀(C <sub>6</sub> H <sub>5</sub> OH)	ppm	10	불검출	불검출
비소(As)	ppm	3	불검출	0.009
카드뮴(Cd)	mg/Sm'	1(12)	0.05	불검출
납(Pb)	mg/Sm'	5(12)	0.30	0.047
크롬(Cr)	mg/Sm'	1(12)	0.05	0.030
구리(Cu)	mg/Sm'	10	0.08	0.046
아연(Zn)	mg/Sm'	10	0.10	0.043
니켈(Ni)	mg/Sm'	20	0.03	불검출
수은(Hg)	mg/Sm'	5(12)	불검출	불검출

< 소각시설 감시원 교육의 횟수와 내용 >

구분 항목	교육대상자	교육 횟수	교육 내용
정기 교육	주민감시원	2회(이상) /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원의 안전교육</li> <li>- 쓰레기 반입검사대 사용방법</li> <li>- 쓰레기 반입차량 유도관리</li> <li>- 생활쓰레기 성상에 대한 사항</li> </ul>
신규임용감시원 (신입교육)	신규임용 주민감시원	신규 임용시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li> <li>- 주민감시원의 역할 담당</li> <li>- 소각시설 비디오 교육</li> <li>- 소각시설 현장 내 위험장소 설명</li> <li>- 생활폐기물에 대한 사항</li> </ul>
임시 교육	주민감시원	수시(정기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li> <li>- 반입에 대한 현안문제 발생 사항</li> <li>- 반입물에 대한 감시활동 사항</li> </ul>
특별 안전교육	주민감시원	필요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사례 전파교육</li> <li>- 기타 청소행정에 관한 전파교육</li> </ul>

< 불법투기 방지용 무인 카메라 보유현황 및 고장난 카메라 처리계획 >

□ 보유현황

구별 사용여부	계	원 미 구	소 사 구	오 정 구	비 고
계	5	2	1	2	
사 용 중	2	1		1	
미 사 용	3	1	1	1	노후카메라

< 도서관 입지조성절차 추진일정 >

- 공원 조성 입안을 위한 기본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녹지공원과)  
: 2001. 10. 15~2002. 1. 12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과) : 2002. 6. 30(경기도 승인)
- 공원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녹지공원과) : 2002. 7~10월
-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녹지공원과) : 2002. 11~12월
- 토지보상 및 기반조성(시설사업소) : 2003. 1~6월
- 도서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설사업소) : 2003. 1~3월
- 공사 착공 : 2003. 5월
- 준공 : 2004. 12월

< 노 점 현 황 >

(2001. 11. 6 현재)

연도별	계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	비 고
2000년	236	127	95	14	2000. 7. 14 기준
2001년	81	55	26	-	

< 최근 3년간의 시장실 및 관계부서 생수 구입현황 >

(단위 : 원)



연도 부서명	계	1999	2000	2001	비 고
계	99,534,920	22,871,840	36,538,760	40,124,320	
시장(부시장)실	584,600	410,000	60,000	114,600	
공 보 실	1,756,000	560,000	612,000	584,000	
감 사 실	2,180,000	800,000	720,000	660,000	
총 무 과	799,000	30,000	215,000	554,000	
회 계 과	7,2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체 육 청 소 년 과	656,000	0	320,000	336,000	
정 보 관 리 과	1,225,300	342,000	472,500	410,800	
민 원 허 가 과	5,796,600	0	2,340,000	3,456,600	
가 획 예 산 과	977,600	120,000	315,000	542,600	
세 정 과	1,375,000	325,500	486,370	563,130	
부 과 과	4,437,200	1,320,000	1,645,000	1,472,200	
징 수 과	1,639,500	497,000	643,000	499,500	
기 업 지 원 과	1,146,400	350,000	440,000	356,400	
지 식 산 업 과	469,500	0	211,500	258,000	
국 제 통 상 과	878,400	30,000	400,000	448,400	
실업대책총괄과	2,210,000	750,000	830,000	630,000	
사 회 복 지 과	7,879,000	3,549,600	3,971,200	358,200	
여 성 복 지 과	820,000	180,000	180,000	460,000	
문 화 예 술 과	720,800	-	292,000	428,800	
환 경 위 생 과	772,500	0	0	772,500	
도 시 과	501,200		268,000	233,200	
도 로 과	847,550	189,200	288,750	369,600	
교 통 행 정 과	2,155,900	493,900	953,000	709,000	
건 축 과	523,600	0	264,000	259,600	
원 미 구 보 건 소	5,852,800	1,840,000	1,859,000	2,153,800	
소 사 구 보 건 소	5,370,400	1,800,000	2,130,500	1,439,900	
오 정 구 보 건 소	6,365,900	1,610,500	2,226,500	2,528,900	
수 도 행 정 과	2,124,000	588,000	708,000	828,000	
수 도 시 설 과	1,060,000	-	170,000	890,000	
정 수 과	0	0	0	0	
하 수 과	1,091,000	353,500	364,500	373,000	
녹 지 공 원 과	0	0	0	0	
농 산 지 원 사 업 소	0	0	0	0	
청 소 사 업 소	4,930,300	1,612,700	1,658,800	1,658,800	
시 립 도 서 관	0	0	0	0	
도시개발사업소	369,600	0	0	369,600	
시 설 사 업 소	1,011,200	184,000	374,000	453,200	
교통지도사업소	4,443,700	0	0	4,443,700	
원 미 구	3,138,000	233,200	1,395,600	1,509,200	
소 사 구	9,262,370	2,302,740	3,370,540	3,589,090	
오 정 구	6,964,000	0	3,954,000	3,010,000	